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제64호”를 “제54호까지, 제54호의2 및 제54호의3까지, 제59호부터 제64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고등교육정책과·지역혁신대학지원과·국립대학정책과·사립대학정책과·학술진흥과·대학재정장학과·대학학사제도과·대입정책과·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직업교육정책과·전문대학정책”을 “고등교육정책과·지역혁신대학지원과·국립대학정책과·사립대학정책과·학술진흥과·대학재정장학과·대학학사제도과·대입정책과·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인재양성정책과·전문대학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대학교원 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대학교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조정

제6조제8항제19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역선도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제6조제13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대학 재정지원 사업 수혜 제한에 관한 사항

제6조제16항제3호, 제9호 및 제3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업교육정책과장”을 “인재양성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등기술학교

운영”을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인재정책 및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4.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인재정책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적역량 전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7. 대한민국 인재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고등분야 인재양성 총괄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에 관한 사항
10. 공학교육 혁신시책의 수립·시행 및 공학교육 인증과 관련된 대학 지원

제7조제7항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초·중등교육 분야 인재양성정책 총괄

제7조제10항에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초·중등학교 과학·수학·정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1.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추진
22.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 지원 인프라 구축·운영, 체험·탐구·활용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총괄

제7조제11항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6.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17.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제8조제5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시·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4. 초·중·고·특수학교 학교발전기금 제도에 관한 사항

제9조의 제목 “(평생교육국)”을 “(평생직업교육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평생교육국장”을 “평생직업교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평생교육국에 평생학습정책과·인재양성정책과·진로교육정책”을 “평생직업교육국에 평생학습정책과·직업교육정책과·진로교육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7호를 제3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평생직업교육 분야 인재양성정책 총괄

28. 한국형 온라인 대중강좌(K-MOOC) 구축·운영

29. 온라인 대중강좌 등을 활용한 산업연계 단기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제9조제5항제30호(중전의 제27호) 중 “평생교육국”을 “평생직업교육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재양성정책과장”을 “직업교육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고등기술학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적역량 전략 수립”을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및 해외취업·인턴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업교육 정책의 총괄·관리 및 연계·조정

2. 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3.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촉진 및 일반 고등학교 직업과정 제도의 수립·시행 및 운영 지원

5.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 제·개정

7.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지원 및 제도 개선

8. 거점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및 소규모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9.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0.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원센터 운영 지원

11.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책 및 교과용도서의 개발·운영

12.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 교재의 개발 및 개선

13.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4.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취업기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15.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전국 단위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16. 정부부처·산업체·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사항

17. 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시행

18. 국가 수준 직업기초능력 평가제도의 수립·시행

19.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기초능력 함양 및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20. 산업체 인사의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21. 전국단위 기능 경진대회 및 고등학교 직업교육 연구대회 운영 지원

22.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병역제도 관련 지원

23.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제7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삭제한다.

1의2. 대학생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및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8조제1항 단서 중 “5명(6급 2명)”을 “6명(6급 3명)”으로 한다.

별표 1 “기계운영서기보 1”을 삭제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다군(사진촬영 담당) 1”를 신설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52”를 “6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551”을 “552”로 하며, 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식품위생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35”를 “136”으로 하고, “기계운영서기보 1”를 삭제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다군(사진촬영 담당) 1”를 신설한다.

교육부령 제14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명”을 “3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고등교육정책실) ① ~ ④ (생략)	제6조(고등교육정책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산학협력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제3항제45호부터 제6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교육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 ----- 제54호까지, 제54호의2 및 제54호의3까지, 제59호부터 제64호----- -----.
⑥ 고등교육정책실에 고등교육정책과·지역혁신대학지원과·국립대학정책과·사립대학정책과·학술진흥과·대학재정장학과·대학학사제도과·대입정책과·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직업교육정책과·전문대학정책과 및 전문대학지원과를 둔다.	⑥ ----- 고등교육정책과·지역혁신대학지원과·국립대학정책과·사립대학정책과·학술진흥과·대학재정장학과·대학학사제도과·대입정책과·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인재양성정책과·전문대학정책----- -----.
⑦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직업교육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⑦ ----- -----. <단서 삭제>
⑧ 고등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 8. 삭 제 9. ~ 18. (생 략) 19. <u>지역대학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u> 20. <u>국가균형발전 관련 교육 정책의 수립·시행</u> 21. <u>지역대학과 지역기업(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연계에 관한 사항</u> 22. <u>지역선도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u> 23. (생 략) ⑨ <u>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9. (생 략) <u><신 설></u> ⑩ ~ ⑫ (생 략) ⑬ <u>대학재정장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22. (생 략)	6의2. <u>대학교원 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대학교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조정</u> 9. ~ 18.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23. (현행과 같음) ⑨ -----. 1. ~ 9. (현행과 같음) 10. <u>지역선도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u> ⑩ ~ ⑫ (현행과 같음) ⑬ -----. 1. ~ 22.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⑭ · ⑮ (생 략) ⑯ <u>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1의6. (생 략) 2. 삭 제 3. <u>대학생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및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u> 4. ~ 8. (생 략) 9. <u>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에 관한 사항</u> 10. ~ 31. (생 략) 32. <u>공학교육 혁신시책의 수립·시행 및 공학교육 인증과 관련된 대학 지원</u> ⑰ <u>직업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u> 2. <u>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촉진 및 일반 고등학교 직업과정 제도의 수립·시행 및 운영 지원</u>	23. <u>대학 재정지원 사업 수혜 제한에 관한 사항</u> ⑭ · ⑮ (현행과 같음) ⑯ -----. 1. ~ 1의6. (현행과 같음) <u><삭 제></u> 4. ~ 8. (현행과 같음) <u><삭 제></u> 10. ~ 31.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⑰ <u>인재양성정책과장-----</u> -----. 1. <u>인재정책 및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u> 2. <u>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u>
---	---	--	--

3. <u>고등기술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u>	3. <u>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u> --
4. <u>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 제·개정</u>	4. <u>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u>
5. <u>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및 해외취업·인턴십 지원에 관한 사항</u>	5. <u>국내외 인재정책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u>
6. <u>특성화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지원 및 제도 개선</u>	6. <u>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적역량 전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u>
7. <u>거점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및 소규모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u>	7. <u>대한민국 인재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u>
8. <u>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u>	8. <u>고등분야 인재양성 총괄에 관한 사항</u>
9. <u>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원센터 운영 지원</u>	9. <u>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통계에 관한 사항</u>
10. <u>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책 및 교과용도서의 개발·운영</u>	10. <u>공학교육 혁신시책의 수립·시행 및 공학교육 인증과 관련된 대학 지원</u>
11. <u>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 교재의 개발 및 개선</u>	<삭 제>

12. <u>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	<삭 제>
13. <u>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취업기능 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시행</u>	<삭 제>
14. <u>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전국 단위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u>	<삭 제>
15. <u>정부부처·산업체·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사항</u>	<삭 제>
16. <u>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시행</u>	<삭 제>
17. <u>국가 수준 직업기초능력 평가제도의 수립·시행</u>	<삭 제>
18. <u>특성화고등학교 직업기초능력 함양 및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u>	<삭 제>
19. <u>산업체 인사의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u>	<삭 제>

20. 전국단위 기능 경진대회 및 고등학교 직업교육 연구대회 운영 지원	<삭 제>
21.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병역제도 관련 지원	<삭 제>
22.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 도개선에 관한 사항	<삭 제>
23. 직업교육 정책의 총괄·관 리 및 연계·조정	<삭 제>
⑮·⑯ (생 략)	⑮·⑯ (현행과 같음)
제7조(학교혁신지원실) ① ~ ⑥ (생 략)	제7조(학교혁신지원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학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 23. (생 략)	1. ~ 23. (현행과 같음)
<신 설>	23의2. 초·중등교육 분야 인재양 성정책 총괄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⑩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⑩ -----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 19. 삭 제	

<신 설>	20. 초·중등학교 과학·수학· 정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 시행
<신 설>	21.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 에 관한 사업 추진
<신 설>	22.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 지원 인프라 구축·운영, 체험·탐 구·활용 중심의 프로그램 개 발 보급 등 융합인재교육 활 성화 총괄
⑪ 고교교육혁신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⑪ -----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신 설>	16.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신 설>	17.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 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 원
⑫ ~ ⑭ (생 략)	⑫ ~ ⑭ (현행과 같음)
제8조(교육복지정책국) ① ~ ④ (생 략)	제8조(교육복지정책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⑮ 지방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⑮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u>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u>	<삭 제>
13. ~ 22. (생 략)	13.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u>시·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신 설>	24. <u>초·중·고·특수학교 학교발전기금 제도에 관한 사항</u>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9조(평생교육국) ① <u>평생교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제9조(평생직업교육국) ① <u>평생직업교육국장-----</u>
② <u>평생교육국에 평생학습정책과·인재양성정책과·진로교육정책과 및 이러닝과를 둔다.</u>	-----
③ (생 략)	-----
④ 삭 제	-----
⑤ <u>평생학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
1. ~ 26. (생 략)	② <u>평생직업교육국에 평생학습정책과·직업교육정책과·진로교육정책-----</u>
	③ (현행과 같음)
	⑤ -----

	1. ~ 26. (현행과 같음)

<신 설>	27. <u>평생직업교육 분야 인재양성정책 총괄</u>
<신 설>	28. <u>한국형 온라인 대중강좌(K-MOOC) 구축·운영</u>
<신 설>	29. <u>온라인 대중강좌 등을 활용한 산업연계 단기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u>
27. 그 밖에 <u>평생교육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	30. ----- <u>평생직업교육국 -----</u>
⑥ <u>인재양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⑥ <u>직업교육정책과장-----</u>
1. <u>인재정책 및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u>	-----.
2. <u>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u>	1. <u>직업교육 정책의 총괄·관리 및 연계·조정</u>
3. <u>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u>	2. <u>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u>
4. <u>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u>	3. <u>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촉진 및 일반 고등학교 직업과정 제도의 수립·시행 및 운영 지원</u>
5. <u>글로벌 인재 포럼 및 미래교육·인재개발정책 관련 포럼의 운영</u>	4. <u>고등기술학교 -----</u>

	5. <u>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 제·개정</u>

6. <u>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적역량 전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u>	6. <u>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및 해외취업·인턴십 -----</u>	<u>성화 총괄</u>	
7. <u>대한민국 인재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u>	7. <u>특성화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지원 및 제도 개선</u>	<u><신 설></u>	14. <u>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취업기능 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시행</u>
8. <u>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u>	8. <u>거점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및 소규모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u>	<u><신 설></u>	15. <u>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전국 단위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u>
9. <u>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u>	9. <u>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u>	<u><신 설></u>	16. <u>정부부처·산업체·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사항</u>
10. <u>초·중등학교 과학·수학·정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u>	10. <u>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원센터 운영 지원</u>	<u><신 설></u>	17. <u>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시행</u>
11. <u>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추진</u>	11. <u>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정책 및 교과용도서의 개발·운영</u>	<u><신 설></u>	18. <u>국가 수준 직업기초능력 평가제도의 수립·시행</u>
12. <u>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u>	12. <u>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 교재의 개발 및 개선</u>	<u><신 설></u>	19. <u>특성화고등학교 직업기초능력 함양 및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u>
13. <u>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 지원 인프라 구축·운영, 체험·탐구·활용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융합인재교육 활</u>	13. <u>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	<u><신 설></u>	20. <u>산업체 인사의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u>
		<u><신 설></u>	21. <u>전국단위 기능 경진대회 및 고등학교 직업교육 연구대회 운영 지원</u>

<u><신 설></u>	<u>22.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병역제도 관련 지원</u>
<u><신 설></u>	<u>23.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 도개선에 관한 사항</u>
⑦ 진로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u><신 설></u>	⑦ ----- -----. 1. (현행과 같음) <u>1의2. 대학생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및 관련 기본계획의 수 립·시행</u>
2. ~ 19. (생 략) ⑧ 이터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3. (생 략) <u>24. 한국형 온라인 대중강좌(K- MOOC) 구축·운영</u>	2. ~ 19. (현행과 같음) ⑧ ----- -----. 1. ~ 23. (현행과 같음) <u><삭 제></u>
<u>25. 온라인 대중강좌 등을 활용 한 산업연계 단기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u>	<u><삭 제></u>
제18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 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 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제18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 항 및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 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 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 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 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5명(6 급 2명, 7급 3명)은 임기제공무 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 략)	----- ----- ----- ----- ----- ----- 6명(6급 3명)----- -----. ②·③ (현행과 같음)
교육부령 제143호 교육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교육부령 제143호 교육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 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6급 2 명 및 7급 3명은 2022년 12월 3 1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간) ----- ----- 3 명 ----- -----.

신·구정원대비표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기계운영서기보	<u>1</u>	<u><삭 제></u>	-1
·	·	·	
·	·	·	
전문경력관	<u><신 설></u>	<u>1</u>	+1
다군(사진촬영 담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652</u>	<u>653</u>	+1
·	·	·	
·	·	·	
일반직 계	<u>551</u>	<u>552</u>	+1
·	·	·	
·	·	·	
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 ·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 사·기상주사·보건주사·식품 위생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 ·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진 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u>135</u>	<u>136</u>	+1
·	·	·	
·	·	·	
기계운영서기보	<u>1</u>	<u><삭 제></u>	-1
·	·	·	
·	·	·	
전문경력관	<u><신 설></u>	<u>1</u>	+1
다군(사진촬영 담당)			